

제정일	개정일	개정차수	분류번호	총페이지
2024. 08. 01	2025. 05. 20	1	TK-A-109	8

CP(Compliance Program) 운영 규정

CP운영팀

2025. 05. 20

제1장 총칙

제1조 목적

이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적용범위

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, 이와 상충되는 회사의 규정에 관하여 이 규정이 우선한다.

제3조 용어의 정의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“경쟁당국”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.
- ②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는 공정거래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.
- ③ “임직원”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.
- ④ “자율준수”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⑤ “자율준수관리자”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⑥ “자율준수편람”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 라인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,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매뉴얼을 말한다.
- ⑦ “자율준수프로그램(이하 “CP”라 한다.)”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.
- ⑧ “CP 주관부서”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제1절 최고경영자

제4조 권한

-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.

- ③ 최고경영자는 CP의 운영에 관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5조 의무

- ①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가 회사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,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적인 보고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.
- ③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P 운영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CP 운영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.

제2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6조 선임과 해임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직위와 직급을 가지는 자로 한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및 권한을 사내·외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,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CP 주관부서의 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이사회 승인으로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CP 업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권한 및 의무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 2. 회사 전반에 자율준수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 제안권
 3.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권
 4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
 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-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직무 수행
 2. CP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

제8조 직무

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①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
- ② CP 운영
- ③ CP 운영 계획, 현황 및 실적을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
- ④ 자율준수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
- ⑤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대한 징계위원회 상정요구
- ⑥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
- ⑦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
- ⑧ 자율준수협의회 소집 및 운영
- ⑨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
- ⑩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 독립성 보장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,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 관리자가 CP 운영에 관한 기준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자율준수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 회사의 지원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CP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3절 자율준수협의회

제11조 설치 및 구성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기구로서 자율준수 협의회를 운영한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.
- ③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공정거래 법규 유관 부서의 장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12조 역할

① 자율준수협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
2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동향 파악 및 전파
3. 자율준수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및 자문
4. 기타 CP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자문

제13조 운영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자율준수협회를 개최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자율준수협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4절 CP주관부서 및 임직원

제14조 CP주관부서

- ①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회사의 자율준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제2항의 보고사항 중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④ CP 주관부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항상 독립성과 공정 무사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며,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업무를 피해야 한다.

제15조 CP 주관부서 직원의 권한 및 의무

- ① CP 주관부서 직원의 회사 전부서 및 임직원에게 대하여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서약서, 자료제공 동의서, 사실 확인서 등 감사 관련 서류 징구
 2. 관련 부서에 자체 조사 의뢰 및 그 결과 요구
 3. 정기 감사(점검)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회의 참석
 4. 기타 감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
 5. CP 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
 6. CP 교육의 계획, 실시, 평가
 7. CP 정기감사의 계획, 실시, 평가
 8. 공정거래 리스크 식별, 평가
 9. 법령 위반에 따른 (사후)조사 및 내부제보 조사

제16조 임직원

- ①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, 즉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.

제3장 CP의 운영

제17조 자율준수 의지 천명

-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자율준수 문화 조성과 임직원들의 CP실천을 위하여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작성되어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.
- ③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대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④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실천의지가 회사의 핵심 사업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18조 자율준수편람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,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고, 임직원들이 상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한편, 배포 시 고위험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을 포함한 CP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자율준수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9조 모니터링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준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목적 달성에

적합한 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모니터링 요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위반 사실 발견 시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 및 부서 내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와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년 2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한다.
- ④ 점검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식별하여 각 부서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하여 CP 주관부서에서 주관 하에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0조 교육의 실시 및 내용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을 실시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고 위험 부서의 임직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필요 시 계층별, 분야별로 교육대상 및 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실시한다.

제21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및 관리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, 적합한 통제를 통해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리스크 등급은 상, 중, 하의 3단계로 구분한다. 리스크 등급이 ‘중’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, 경감 또는 제거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거래과정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분하고, 협력업체, 실무자, 임직원 등 위반 행위자별 평가를 구분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조의 위험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 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, 경감 또는 제거하도록 한다.

제22조 사전업무협의제도

-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이에 관하여 CP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사전업무협의를 요청

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CP 주관부서는 임직원과의 사전업무협의 결과를 문서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3조 내부고발 시스템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, 임직원이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례를 발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내부에 기명 또는 익명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.
- ②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한 제보는 회사 홈페이지, 이메일, 우편, 전화,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,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타 부서의 보복, 차별,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판단하여,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위반사항에 대하여 CP 주관부서에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, CP 주관부서는 조사 후 그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 및 **최고경영자**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주관부서 운영 인원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익명성,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⑤ 주관부서는 CP와 관련된 내부 제보가 독립성, 중립성, 객관성, 익명성을 보장될 수 있는 적합한 인원을 조사담당자로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하도록 한다.

제24조 인사제재의 내용 및 절차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제재 조치를 인사 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시정조치, 법 위반 방지교육 등을 실행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사실을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25조 인센티브의 내용 및 절차

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.

제26조 효과성 평가의 실시 및 관리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회 이상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,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행

- 하여야 하며, 그 결과 및 개선조치를 이사회 및 [최고경영자](#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, 특히 CP 운영에 관한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법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27조 문서관리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주관부서 인원 중에서 문서관리자를 지정하여 문서의 수발, 분류, 보관, 보존, 이관을 담당하게 한다.
- ⑤ 자율준수협의회에 소속된 각 부서는 부서별 문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부서별 문서관리자가 자율준수 관련 문서의 이관, 폐기를 할 경우 사전에 CP 주관부서의 문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장 기타

제28조 공시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현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,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파하여야 한다.

제29조 위임

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으로서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30조 개정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.

제31조 시행일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이 규정은 2025년 05월 2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](#)